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해설(上)

홍 종 민

우리 협회 전문위원

건설안전기술사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제도는 '88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해부족으로 사용에 혼란이 있고 또한 사용 잘못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소의 도움이 되고자 표준안전관리비의 이해를 위한 해설과 사용방법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목

차〉

I. 안전관리비의 제정 배경

II. 연역 및 법적 근거

1. 연역

2.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2)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III.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1. 주요내용

2. 고시내용 해설

1) 용어 정의

2) 적용범위

3) 공사의 분류

4) 계상기준

5) 계상의 시기

6) 수급자의 의무

7) 사용기준

8)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9) 안전관리비 사용의 확인

10) 안전관리비 편성 및 집행

IV. 안전관리비 관련규정 위반시 불이익

1. 안전관리비 중점 점검사항

1) 미계상 여부 확인

2)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 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비율 준수 여부 확인

2. 안전관리비 관련규정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검토

2) 위반항목 집계 및 확인서 징수

3) 의견진술

4)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V. 참고 자료

I. 안전관리비의 제정 배경

건설업에 있어서의 재해가 다른 산업의 재해에 비하여 재해의 종류가 다양하기 이를 데 없는 이유는 건설업이란 업종이 종합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업종이 모여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에서 산업재해예방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정비하여 관리적, 기술적인 안전대책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노사 양측 모두가 안전의식이 빈약하여 기업주는 재해예방을 위한 경비지출을 꺼리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건설현장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자금의 부족으로 재해예방시설의 확충 내지는 개선을 하지 못하며 건설현장내의 중요한 안전활동인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설업 시공자에게 안전관계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여 부족한 안전관계업무 경비에 도움을 줌으로써 건설업에서의 건설재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관리비가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II. 연혁 및 법적 근거

1. 연혁

제정	1988년 2월 15일	노동부고시 제88-13호
개정	1989년 2월 10일	노동부고시 제89-4호
개정	1991년 7월 4일	노동부고시 제91-39호
개정	1991년 9월 27일	노동부고시 제91-56호
개정	1994년 10월 21일	노동부고시 제94-45호
개정	1995년 2월 23일	노동부고시 제95-6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제도는 1988년 2월 15일에 제정되어 적용되어오다 1989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지도차원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당초 고시제정의 효과에 크게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법률 제4220호)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참조).

2.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第30條(標準安全管理費의 計上 등) ①事業을 他人에게 都給하는 者 및 建設業을 행하는 者는 工事契約을 체결할 때에 勞動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標準安全管理費를 工事金額에 計上하여야 한다.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安全管理費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定할 수 있다.

1. 工事의 進척별 사용기준
2. 建設工事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標準安全管理費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者 또는 建設業을 행하는 者는 당해 標準安全管理費를 다른 目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이 定하여져 있는 標準安全管理費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 중 勞動部令이 定하는 建設工事を 행하는 事業主가 標準安全管理費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労働部長官이 지정하는 専門機關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専門機關의 지정·지정의 取消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는 건설공사에서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해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한 것이다.

건설공사에서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제도는 노동부고시로 1988년 2월 15일에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이 제도를 정착시켜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법에서는 법정제도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계상하는 데에서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경영관리층에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조 제2항은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한 것이다.

또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시행령 제24조)로서 수급업체의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 조정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방법 및 내역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조가 뜻하는 재해예방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생기고 있어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공사의 규모별, 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등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노동부장관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한편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준안전관리비가 입법 취지대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조)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②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안전관리비의 산정기준 등의 세부 절차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진척에 따른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기

준

2. 건설공사의 규모별·종류별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6조의 3(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진척에 따른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2. 건설공사의 규모별·종류별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외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인력·시설기준 또는 수수료 기타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안전관리비의 사용) ①도급인인 사업주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수급인에게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표준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도급인인 사업주의 책임하에 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급인인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건설현장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영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은 건설업에 대한 산업재해예방무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정·지도감독, 수수료 기타 안전관리비 사용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Ⅲ.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1. 주요내용

개정된(노동부고시 제94-45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내용은 개정 전의 내용과 많은 상이점이 있다.

우선 개정 전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별도 계상비용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계상이 다르게 되어 있어 적용하는 측과 사용하는 측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므로 이번 개정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기본비용과 별도 계상비용을 하나로 묶어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라고 하였으며 시행령 제26조의 3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이 첨가되었다.

2. 고시내용 해설

1) 용어정의

제2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무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 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영 제2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외의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영 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외(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규칙·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는 개정 전의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의 용어는 삭제되었으며 시행령 제26조의

3에 규정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 안전관리비 사용지도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는 「기술지도」라는 용어가 삽입되었다.

기술지도는 전담기술지도와 정기기술지도로 구분된다.

- 「전담기술지도」…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안전관리비 사용기준과의 모순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기관에서 지도하는 것을 말함

- 「정기기술지도」…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닌 안전관리업무 외 다른 업무도 볼 수 있는 겸직가능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어 이 또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과의 모순이 있으므로 겸직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의 미비에 따른 결함을 보완키 위하여 지도기관에서 지도하는 것을 말함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사업주는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자격·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하거나 개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및 지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사업장에서 법 제15조 제1항 및 이 영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개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은 총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및 4,000만원 미만이라도 일괄적용을 받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일반적으로 일부 특수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4,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안전관리비의 계상시기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이므로 발주자는 수많은 입찰자 중 어떤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자 전부가 일괄 가입하였다는 전제하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건설공사(한전의 단가계약공사 등)는 계약체결시 발주자별 자체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산재에 일괄가입하였다는 증명서를 받고 4,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다.

3) 공사의 분류

제4조(건설공사의 분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에 의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한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건설관계법령 등에 의한다.

건설공사의 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분류가 종전 일반건설공사를 공사의 종류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건설사업종류 예시에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건설관계법령에 의하여 분류하였다.

안전예설 2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단독발주공사에 한하여 별도 정한 율을 적용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분류된 율에 따른다.

[참조]

개정 전 공사의 분류(산재보상보험법)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일반건설공사	건축건설공사	생략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기타건설공사	
중건설공사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생략
	수력발전시설공사	
	터널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생략
	고가 및 지하철 신설공사	

개정 후 공사의 분류(산재보상보험법)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공사	생략
	도로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생략
중건설공사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생략
	수력발전시설공사	
	터널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생략
	고가 및 지하철 신설공사	

4) 계상기준

제5조(계상기준) ①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금

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를 합한 금액

②발주자 및 자채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③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건설사업장의 산업 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은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제5조 1항의 단서 규정(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 당해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은 안전관리비 산정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재료비를 대상액에 포함함으로써 당해공사의 위험요인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비 증가의 상한선을 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예를 들어 대형컴퓨터 등 고가품의 기계설비를 단순히 설치만 하는 공사의 경우 동 기계설비를 발주자가 제공한다면 동 기계설비의 가격까지를 대상액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가 대폭 증가된다. 따라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상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계상한 비용의 1.2배를 초과할 때는 그 1.2배가 안전관리비이

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상한 당해비용이 안전관리비가 된다(예제 참조).

② 제5조 제3항은 개정 전 별도 계상비용을 설계내역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항과 같은 맥락으로서 공사의 특성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시설 등의 비용을 표준품셈 및 기타 법령에 의거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안전관리비 계상 예

1. 직접노무비 3억원, 재료비 1억원, 관급자재비 8천만원 일반건설공사(갑)일 경우
 - 안전관리비 대상액
 - i) 직접노무비+재료비 =3억원+1억원 =4억원
 - ii) 관급자재비 =8천만원
 계 4억8천만원
 - 5억원 미만 공사이므로 별표 1에 의하여 을 2.48% 적용
 - i) 직접노무비+재료비 =4억원
 - 400,000,000×2.48% =9,920,000원

- ii) 관급자재비 =8천만원
- 80,000,000×2.48% =2,240,000원
- 9,920,000×20% =1,984,000원
- 2,240,000>1,984,000이므로 관급자재 안전관리비는 1,984,000원이 됨
- iii) 안전관리비
 - i)의 안전관리비 9,920,000원
 - ii)의 안전관리비 1,984,000원
 계 11,104,000원이 됨
2. 직접노무비 30억원, 재료비 10억원, 관급자재비 2억원인 일반건설공사(갑)일 경우
 - 안전관리비 대상액
 - i) 직접노무비+재료비 =30억원+10억원 =40억원
 - ii) 관급자재비 =2억원
 계 42억원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이므로 별표 1에 의하여 을 1.81%와 기초액 3,294천원을 적용
 - i) 직접노무비+재료비 =40억원
 - 4,000,000,000×1.81% =72,400,000원

별표 1 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 종류	대 상 액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비율(X)	기초액(C)	
일 반 건 설 공 사 (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 반 건 설 공 사 (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 건 설 공 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 도 · 궤 도 신 설 공 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 수 및 기 타 건 설 공 사		1.24(%)	0.91(%)	1,647천원	0.94(%)

- 주 : 1.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2. 별표 1에서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업종류별 예시표에 의한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제외시키고 이 고시에서 정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상하되 일반건설공사(을)·중건설공사·철도·궤도신설공사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해당 공사종류에 따른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3.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단독발주에 한하여 별표 1의 안전관리비율을 적용한다.

안전해설 2

ii) 관급자재비 = 2억원
 $200,000,000 \times 1.81\% = 3,620,000\text{원}$
 $72,400,000 \times 20\% = 14,480,000\text{원}$
 $14,480,000\text{원} > 3,620,000\text{원}$ 이므로 관급자재
 안전관리비는 3,620,000원이 됨

iii) 안전관리비
 i)의 안전관리비 72,400,000원
 ii)의 안전관리비 3,620,000원
 iii) 기초액 3,294,000원
 계 79,314,000원이 됨

3. 공사비 50억원 이상은 5억원 미만과 같은
 요령으로 계산함

5) 계상의 시기

제6조(계상시기 등) ①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5조의 규
 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고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은 개인발주공사 또는 자기공사일
 경우 노무비 및 재료비가 구분되지 않고 총액개
 념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본다.

6) 수급자의 의무

제7조(수급인의 의무 등)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
 사자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건설공사의 낙찰
 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
 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등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낙찰률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계약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낙

찰률로 본다.

②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의 일부를 도
 급에 의하여 행할 때 계상된 안전관리비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
 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수급인 또
 는 자기공사자 책임하에 하수급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가 공사수주를 목적
 으로 저가입찰을 할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투찰가액을 결정할 시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
 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해 놓은 안전관리비보
 다 훨씬 적게 반영하거나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경
 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발주자는 낙찰자에게 낙찰
 자가 입찰시 반영한 안전관리비 이상은 줄 수 없
 다. 그러나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을 위한 비용이므로 발주자로부터 안전관리비를
 얼마를 받았던간에 최소한 예정가격 작성시 계
 상된 안전관리비에 총공사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공사도급 계약서에
 이 사항을 명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저가입찰일
 경우 낙찰율에 맞는 안전관리비를 확보하여 집
 행할 경우 안전관리비 자체는 부족할 것이나 이
 는 산업안전보건법, 령, 규칙 등에 의하여 도급
 자 부담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
 지도를 하므로 공사수주시 저가입찰로 인한 안
 전관리비의 부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7) 사용기준

제8조(사용기준)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

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제1항은 안전관리비의 중복사용을 금지하고 사용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제5조(계상기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직접비용에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계상된 비용은 동고시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기준은 항목1항이

40% 이하, 2항이 40%이하, 3항이 20% 이하, 4항이 20% 이하, 5항이 20% 이하, 6항이 10% 이하로서 항목 1항에서 6항까지 모두 150% 이하로 되어 있다. 이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항목별 사용기준을 조정 또는 제외하여 100%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2항은 안전관리비를 적기에 투입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공정율에 따라 안전관리비 최소 사용기준을 정하였으며 또한 공사의 특성에 따라 현장의 감독자나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율에 따른 최소사용기준 이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다음 월에 사용하여도 가능토록 사용상의 여유를 두고 있는 규정이다 <별표 3 참조>.

지금, 당신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 대리는 어느날부턴가 휘파람을 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전과는 달리 아침에도 20분 일찍 출근해 그날의 업무를 챙겨보면서 경쾌한 휘파람 한번, 점심 먹기 1시간 전 쯤이면 또 즐거운 휘파람 소리.

김 대리의 저녁시간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퇴근시간이 지나도 몽기적 몽기적 시간 보내다가 뜻맞는(?) 사람들과 술 한잔, 일주일 중 나흘은 그렇게 똑같은 오후를 보내던 김 대리가 퇴근 시간 전에 그날의 업무를 모두 정리하고 또 그렇게 휘파람을 불며 회사문을 나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김 대리가 드디어 연애를 하는구나”하는 것부터 “잠깐 저러다 말겠지”라는 무관심까지 갖가지 추측을 했지만 김 대리가 왜 갑자기 즐거워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김 대리의 마음 속에 생긴 자신감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후배 신입사원이 하나씩 들쭉 들어오면서 김 대리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입사 때만 해도 영어잡지도 보고 신문도 살살히 읽어가며 수첩을 빼곡하게 메웠던 김 대리는 얼마 전 슬자리 약속만 적혀있는 자신의 수첩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 자기 계발을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속에 자신이 비취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씩 바뀌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 대리는 몇년 전 입사 공부 때 쓰고 난 후 한번도 듣지 않은 영어회화 테이프부터 꺼냈습니다. 신문도 열심히 읽기 시작하고 서점에도 자주 들러 책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는 자신의 생활이 바뀌어 가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한 자신감, 생활에 대한 자신감...

그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얼마만큼 성실하게 투자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걸 새삼 깨달으면서.

- 「LG 엔지니어링」 '95. 11월호에서 -